# 구독료 월30000

원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제널



eAnSe.com 智知30是山 Q&A 是서里理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6/23 통권 1524호

\_\_\_\_\_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mark>名品</mark>:

CEO G[M]O] — O[O] 4223

고객의 니즈(Needs)에 응하지 말라

납세자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 경영관리임직원 패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청년창업자들이 초기 고정비 부담없이 시장진입·지속 성장하는 구체적 요령 10선

# CFO·외계실무자·쪼세전문가 정보

- 종업원에게 대여한 학자금이나 일시적 가불금은 인 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함
- 납세자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 ■세금 신고 길라잡이!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
-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부터 시행합니다
- ESG 보고 관련 IFRS재단의 동향
-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3년간 지원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인적분할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개념에는 유형·무형·투자자산 모두 포함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법인이익의 내외부 분배지급시 소득별 원천징수세율과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구분	원천	소득수취자 개인(개인시업자)	법인 또는 금융회사	
이자소득	차입금 이자	14%(15.4%)	14%(지방소득세 징수안함) 금융회사	
기타이자	비영업대금	25%(총 27.5%)	25%(지방소득세 징수안함)	
배당소득	기업이익	대부분 14%(15.4%)	0%(법인의 익금산입, 지급명세서는 제출함)	
근로소득	노동대가	월별 간이세액조견표 +연말정산	해당없음	
퇴직소득	퇴직시	퇴직금 정산과 기본세율	해당없음	
사업소득	실적보수	대부분 3.3% 세금계산서 주고학		
기타소득		대부분 20% 세율 (법정경비 60%하면 8.8%임)	없음(0%)	
연금소득		공적연금기본세율, 사적연금 3~5%	해당없음	
봉사료등		대부분 5.5%	해당없음	
소득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인별 지급명세서	법인별 지급명세서 (이행상황신고와 함께 제출)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 중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24 호 / 주가 25호

2021 6 23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작 : ㈜ 안건쪼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02) 718-8565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 · 수도권 · 경기 · 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 · 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 · 경북 전화:053) 654-9761 팩人:053) 627-1630
- 대전 · 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 · 안산 전화: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①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10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ESG경영 실천을 위한 법인이익의 내외부 분배지급시 소득별 원천징수세 율과 지급명세서 제출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청년창업자들이 초기 고정비 부담없이 시장진입·지속성장하는 구체적 요령 10선	2			
C E O 에 세 이	고객의 니즈(Needs)에 응하지 말라	4			
-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세 무 · 회계 상 담 자 문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처분 시 회계처리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용역소득 원천징수 세율 - 업무관련 의료비를 개인카드 사용					
눈에 맞는 절세미인	종업원에게 대여한 학자금이나 일시적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 니함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상품의 차이 -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10 11			
직장인Survival	인맥만들기 10계명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ul> <li>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를 임차인이 해당토지에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인-1103, 2020.05.26)</li> <li>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사전법령법인-1010, 2020.11.27)</li> </ul>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국세청, 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 일괄지급	15			
마케팅 Tax consulting	인적분할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개념에는 유형·무형·투자자 산 모두 포함됨	14			
세 무 정 보	- 납세자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 세금 신고 길라잡이!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	16 24 28			
회 계 정 보	-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를 '23.1.1일부터 시행합니다 - ESG 보고 관련 IFRS재단의 동향	36 42			
경 영 정 보	-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3년간 지원	45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27			

 $2021 \cdot 06 \cdot 23$ www.eAnSe.com 1

# 청년창업자들이 초기 고정비 부담없이 시장진입 · 지속성장하는 구체적 요령 10선



박유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1. 창업의 계기를 분석하고 열망·끈기를 갖는다.

누구나 생존본능으로 끈기를 갖고 계속하면 자기인건비는 번다는 심정(기대치를 자신에게 만 집중하여 소박하게 시작함)

- 창업계기?(취업대란, 조기퇴직, 독립자유정신, 자기사업, 주변설득엔 신중, 기술 · 인재 · 자금이 조성되는 천재일우의 조건과 이유 분석)
- 2. 실패와 성공사례를 분석한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 창업희망진출분야를 참고하여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실패한 사례나 경험담을 분석하여 절대 실패하지 않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기대치를 낮추고, 무리하지 않는 시작 등)

3. 창업희망분야, 유사 직종에 들어가서 배운다

기회를 만들어 성과급사원이나 무급직원, 인턴으로라도 근무해 보며, 해당사업 성공 지속의 본질은 무엇인지, 단점·개선점은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자기교육 훈련·체득함.

- 4. 적성 맞고 잘 아는 기존시장에 약간의 차별화로 진입한다 창업자 본인의 취미·적성에 맞을수록 좋고, 이미 활성화된 제품서비스 시장에서 통용되는 사업분야를 고르고, 여기에 반발짝 앞서거나 차이나는 방법·기술을 적용함.
- 5. AI, 온라인 IT, 코로나 비대면, 특급배송시대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로 방향을 설정한다. 특히 AI로 기술변화와 양극화가 심하며, 온라인으로 인해 쏠리는 양극화현상을 염두에 둠, 비대면 반출과 하루 이내 새벽 · 특급배송 등 속도 시대에 부응해야 함.

- 6.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친구 등의 이해와 설득이 중요하다 창업계획과 항목을 설명해보아 잘 이해되고, 소비자 반응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지 분석, 초 기 시장 진입 가능성을 비공식 시장조사하며, 위기시 가족 협조를 구함.
- 7. 핵심제조·서비스의 특화기술은 자신이 가져야 한다(준비된 창업과 시작은 단독으로) 원재료 조달·제조·가공·생산·서비스기술·용역서비스의 핵심지식·경험, 판매유통방 법에서의 핵심 개념과 기술을 스스로 갖고 시작해야, 문제점의 해결책·향후 개선방향을 체 득하고 응용할 수 있음.
- 8. 모든 업무와 기능을 스스로 해보고 초기 고정비를 최소화한 후, 매출수입비례로 인재와 자금을 모은다(자력 성공진입 후 외부자금 투자유치함) 시작은 1인 창업, 인적 · 물적자원에 대한 초기 고정비 최소화를 위해, 창업자 본인이 스스로 생체실험한다는 정신으로 무장(외부장소대신 자기 집에 사업자등록, 유튜브로 특화 시

안을 보여주고 시장조사 및 품평받음)

- 9. 창업자 지원 관련 정부나 사회의 재정자금 · 설비혜택을 활용한다 창업지원센터의 공유사무실이나 무료제공 사무실에서 시작, 공유생산시설, 공유주방 등 온 라인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이므로, 비싼 비용이 소요되는 신생 입지보다는 생산 · 서 비스 관련 모든 고정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원장소에서 시작
- 10. 각종 창업촉진관련 제도를 필요에 따라 적용한다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제도(창업교육 프로젝트 등), 멘토링 지원제도(정부지원 선배기술자 활용, 기술창업타운), 창업공간지원제도(보육센터, 시제품제작처 등, 디지털대장간, 청년창 업꿈터), 사업화자금지원제도(창업패키지, 민관창업자 발굴육성제도)를 적절히 활용함.

# 경영 진 코

# 고객의 니즈(Needs)에 응하지 말라



이해익 원장: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친지 중의 한 분이 필자에게 "노사가 불화할 때 생산된 자동차는 사지 말라!"고 충고 한적이 있다. 어딘가 잔 고장이 많다는 말씀이다. 정말로 고객의 눈은 엄정한 것 같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고객의 판정은 항상 중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개방경제와 글로벌화라는 화두가 이미 현실이 된 오늘이다. 그러기에 기업 경쟁력이란 수 많은 이론에 앞서 '시장'에서 판가름되기 마련이다. 고객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다.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재화에 대해 흔쾌히 대가를 치르고 구입할 때 기업은 존속한다. 다시 말하면 고객의 니즈(Needs), 요구에 철저히 부응할 때야말로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된다는 말이다. 누가 이의를 달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일본의 항구도시 고베에 산다야(三田屋)라는 스테이크 하우스 성공담은 신선한 감동을 준다.

산다야의 주인 히로오카씨는 고베에 있는 록고산(六甲山)모퉁이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전국적으로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로 일구어 냈다. 그는 생전에 세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첫째. 고객의 니즈(Needs)에 응하지 말라.

둘째, 고객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 말라.

셋째, 간판으로 장사하지 말라.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다. 고객의 니즈에 응하지 말라고 거리낌 없이 공언할 수 있는 경영자가 어디 있겠는가, 다만 위의 워칙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덧붙여진다.

"그러나 저희는 고객의 소망에는 응할 것입니다."

즉, '요구'와 '소망'은 다르다는 것이 히로오카씨의 철학이다. 이것은 "고객의 니즈에 응하기 위해" 수많은 종류의 메뉴를 늘어놓고, 대충 70점 정도의 맛을 파는 것을 뛰어 넘자는 것이다.

히로오카씨의 산다야에는 어린이를 위한 런치세트 같은 메뉴가 없다. 그러나 어린이를 대

동한 가족단위로 오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어린이 런치세트란 주 요리를 먹기 전에 곁들여 나온 달콤한 푸딩이나 다과 따위가 있다. 어린이는 그것들을 먹은 후 정작 영양가가 있는 밥은 배가 부르다는 핑계로 늘 식사를 실상 못하는 게 다반사다. 그럴 때 부모는 "전부 먹어야 한다"고 꾸짖는다. 이를 꿰뚫어 보고 어떤 것이 진정 고객을 위한 것인가에 산다야는 답한 것이다.

그러니 부모들은 안심하고 산다야에 어린이와 함께 올 수 있다. 입맛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건강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소망에 응하는 것이다. 위에 소개한 이야기는 파소나그룹의 남부 야스유키의 전언이다. 남부 야스유키는 매출 2조원의 인재파견회사를 일군 억만장자 벤처 기업가다. 발상을 절하는 '나는 취업에 실패한 후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그의 체험적 저서를 일독하며 필자는 경영학도로서 고객에 대한 생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고객에 대한 철학이 히로오카씨의 산다야 정도가 되는 것이야 말로 또 그것을 실천 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화경에서도 살아 남는 기업의 경쟁력이 아닌가 싶다.

FILA코리아의 윤윤수사장 역시 고객에 대한 철학이 남다르다. 무든 제품이 완벽하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옷이든 신발이든 무슨 제품이든 만드는데 있어서 사람 손이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하는 일이 100%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애프터서비스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윤사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을 위해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다. 그것은 고객이 과실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설사 고객의 잘못일지라도 교환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더 안전한 선택은 있을 수 없다.

####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당사는 13년에 합병을 하면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 -465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 후 3년이내 상각했어야 했는데 몇 년동안 계속 이월되어 왔어요

외감법인에서 당기나 전기에 처리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1) 당기에 처리하면 주총에서 안건으로 산정하여 처리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에 표시하여 21년도에 처리하는것인지?
- 2) 올해 처리안하고 22년도에 질문1)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주식발행할인차금에 대한 균등상각규정은 상법 제454조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법 개정에 따라 현 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잉여금이 없다면 최초 분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처분 시 회계처리

2. 20년 12월 말에 평가손익 인식 ) (차)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0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

3. 21년 2월 처분 : 처분시 이자수익 20. 소득세 2. 지방소득세 1 발생하여 총 117원 입금되었습니다.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처분시점에 기말에 인식하였던 평가손익계정도 상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1. 20년 6월에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취득 〉(차)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00 (대) 보통예금 100 2. 20년 12월 말에 평가손익 인식 〉(차)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0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0 이익 10 3. 21년 2월 처분 : 처분시 이자수익 20, 소득세 2, 지방소득세 1 발생하여 총 117원 입금되었습니다 \* 처분시 (차) 보통예금 117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10 (차) 선급법인세 3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처분이익 10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처분시점에 기말에 인식하였던 평가손익계정도 상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차) 보통예금 117 대) 금융자산 110 평가이익 10 처분이익 20 선급법인세 3

#### 용역소득 원천징수 세육

당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업무지원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사, 노무와 관련된 업무 지원및 consulting 이 용역의 주 내용으로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지급하려 고 하는데, 이 지급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워천징수 영수증 발행을 위한 필요경비율과 워천징수세율을 질문 드립니다.

회사와 종속적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용역을 제공 받으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위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필요경비 없이 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위천징수하시면 되며, 사업소득자 본인 이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언무관련 의료비를 개인카드 사용

생산직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위해 병원을 지정하여 치료하고자하는데. 여기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경비처리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개인이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중복으로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개인은 업무관련 사용 금액을 신용카드공제에서는 차감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의료비 공제에서는 공제를 받게되는건지, 둘다 차감을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해당 매출전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직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는 제외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비 의 최종 부담자는 회사이므로 직원은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2021 \cdot 06 \cdot 23$ www.eAnSe.com 7

#### 경 리 인 코 너

# 종업원에게 대여한 학자금이나 일시적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대여금은 대여상대방에 따라 일반대여금과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또는 관계회사 대여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회계상으로는 자금대여의 상대방이 누구냐를 불문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자율이 아닌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상이나 저리의 약정이자율로 거래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고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라도 일시적 급여 가불이나 학자금 대여액 등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종업원에게 학자금 대여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상 당액과 법인이 계상한 이자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귀 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 인규정을 적용받아 세법이 정하는 인정이자율이나 인정이자율과의 차이 상당액을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반영한다. 이때 인정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산입은 물론 금전을 대여받은 직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직원의 상여로 처분함으로써 직원의 개인 근로소득으로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자금대여시 인정이자계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국민연금법에 의해 직원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직원의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미지급소득에대한 소득세 대납액,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 등을 대신 부담한 금액 등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법인세법 규칙 § 44).

또한 사용인(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세법규정상 가지급금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은 배제하면서 인정이자 계산은 적용해 왔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 44(7))이 개정되면서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대여하는 학자금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인정이자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그외의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장기저리나 무이자 자금대여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인정이자금액은 가지급급 적수×(인정이자율-실질대여금리)/365(윤년 366)로 계산하 는데, 인정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 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인 가중

법인에 차입한 금액 등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2021년 귀속분에 대한 당좌대출이자율은 4.6%이다.

#### 무주택종업원의 주택구입 대여금은 인정이자율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때는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는 종업원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아야하는데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이다. 다만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로 차입했더라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대여 금리와의 차액만을 인정이자로 계산한다. 즉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차입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법인세법 \$ 89(3)).

#### ◈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전의 대여 ◈

평규차임이자육로 적용하다

- ① 미지급소득(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규칙 § 44, 1호)
- ②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 급료·기타 비용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 § 44, 2호)
-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지금을 가지 급한 금액 (규칙 § 44, 3호)
- ④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규칙 § 44, 4호)
- ⑤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규칙 § 44. 5호)
- ⑥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안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규칙 § 44, 6호)
- ⑦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포함)의 대여액(규칙 § 44, 7호)
- ⑧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규칙 § 44, 8호)

# 365

#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屋

### ━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상품의 차이

	주요 내용	해당 상품
세제적격	• 납입기간 세액공제 있음 • 연금 수령시 3.3~5.5% 과세	•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세제비적격	• 납입 기간 세액공제 없음 • 연금 수령시 비과세	• 연금보험 등

## 연금서축, 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금액	연간 400만원 (월 34만원 납입)	연간 700만원 (월 59만원 납입)
연말정산 시 환급금액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 66만원 • 연소득 5500만원 초과 : 52만8000원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 115만5000원 • 연소득 5500만원 초과 : 92만4000원

<sup>\*</sup> 연소득 1억2000만원, 종합소득 1억원 초과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간 300만원

# 생실신고확인자 주요 검증항목

주요 사업내역 현황	사업자 현황. 주요 매출처. 주요 매입처. 주요 유형자산 명세. 차입금·지급이자 확인
수입금액 검토	수입금액 신고 현황, 매출증빙발행 현황,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사항 등
필요경비 검토	장부상 금액과 적격증빙 일치 여부 등 *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비롯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급여 등 지급명세서
기타 검토사항	배우자 · 직계존비속 거래 적정여부. 업무용 차량 운영 현황 등

# 성실신고확인제도 업종별 수입금액

업종	해당년도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업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원 이상
3.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 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이상



#### 인맥만들기 10계명

- 1. 생명의 은인처럼 만나라.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은인처럼 감사하며 대하라.언젠가 그럼 순간이 생기면 기꺼이 너의 생명을 구해 줄 것이다.
- 2. 적을 만들지 말라. 친구는 성공을 가져오나,적은 위기를 가져오고 성공을 무너뜨린다. 쓸데없이 남을 비난하지 말고, 항상 악연을 피하여 적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 3. 스승부터 찾아라.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 50% 이상을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 4. 먼저 인간이 되라. 유유상종 이라 했으니 좋은 인간을 만나고 싶으면 너부터 먼저 좋은 인간이 되라.
- 5. 첫사랑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겨라.첫 만남에서는 첫사랑보다도 강렬한 이미지를 남겨라.김거리에서 발길을 차인 돌처럼 잊혀지지 말고, 애써 얻은 보석처럼 가슴에 남으라.
- 6.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함께 하면 유익한 사람이 되라. 든사람, 난사람, 된사람, 그도 아니면 웃기는 사람이라도 되라.
- 7. 하루에 세번 참고, 세번 웃고, 세번 칭찬하라.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미소는 아름다운 이미지 메이킹이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 8. 내일 같이 생각하고 처리하여라. 애경사가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네 일이 내 일 같아야, 내 일도 네 일 같다.
- 9. Give Give Forget 하라. 먼저 주고 조건없이 주고, 더 많이 주고, 조건없이 더 많이주고, 줄때는 아무 말을 하지 말아라. 받을 거 생각하고 주면 정 떨어진다.
- 10.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 잘 나간다고 가까이 하고, 어렵다고 멀리 하지 마라. 한 번 만났으면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

# 최 신 판 례 예 규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 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인-2895, 2020,11,30

#### ▮질 의

- 질의법인은 '민법,제32조 및 주무부처인 00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질의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생활체육인들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하고 있으며, 공제사업의 운영형태는 재단이 공제회비를 납부 받아 80% 업무제휴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납부하고, 20%는 재단의 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공제회비(운영수수료 20%)가 수익사업소득인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 법인, 법인세과-432, 2011,06,30

「\*\*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 · 운용 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755, 2011,6,15,)

#### Marketing Tax consulting

인적분할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개념에는 유형·무형·투자자산 모두 포함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2801, 2020,11,27

#### ▮질 의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모회사가 관계사와 계약을 맺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관계사에 대해 시스템사용료/추가개발/용역대행과 관련한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모회사의 IT팀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위하는 독립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존속법인과도 추가 계약을 통해 시스템사용료/추가개발/용역대행 대가를 수취하고자 함

#### 질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의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 정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

####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에 따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1 \cdot 06 \cdot 23$  www.eAnSe.com 13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사전법령법인-1010, 2020,11,27

#### ▮질 의

- 내국법인이 2018~20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2020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 2020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2018~2019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 2018~20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으로 공 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2020사업연도 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 례(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중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중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자금조달목적의 회사채를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하면서 발행 당시부터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형성된 경우에는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의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수 없음

사전법령법인-983, 2020.11.30

#### ▮질 의

-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회사채를 불특 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하면서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구조로 형 성되어 부득이하게 중도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록
  - 해당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부득이 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한 회사채가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2항에 따른 '금융 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국세청. 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 일괄지급

국세청이 오는 15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심사를 통과한 114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5208억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 19를 감안해 법정지급기한보다 보름 앞당겼다.

이번 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9월, 올해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1년치를 한 번에 받거나 부분적으로 나누어 반기분으로 두 번 지급받 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5일 까지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수령의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 급급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 중기중앙회, 100억 미만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국세청장에 건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국세청에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 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 납세서비스 혁신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 업중앙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 회'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 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 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컨설 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야 하고, 중소기업이 복잡 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행정 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라며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 며, 성실납세를 돕는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적 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위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김 국세청장은 "홈택스를 고도화하여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바일을 이용한 국세 상담·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등 납세서비스의 품 질을 한층 높여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 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정규 질의회신 공개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K-IFRS)의 정규 질의 회신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5월 정한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규질의회신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수행한 정규 질의회신 11 건이며, K-IFRS의 제·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법원·검찰청 사실조회 등에 해당하는 질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개에서는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내용, 회신, 판단근거뿐만 아니라 논의과정에서 검토된 쟁점사 항과 결론도출과정도 포함했다.

회계기준원 측은정규 질의회신 뿐만 아니라 신속질의 회신 중 중요한 사례도 공개하고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교 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납세자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 국세청, 2021. 6

#### 상호합의 절차(MAP)의 개관

상호합의 절차는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상호합의절차는 납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납세자는 서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이하 "국조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우선 해당 개시신청이 상호합의절차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그 결과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합니다. 체약 상대국이 우리 측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국은 협의절차에 착수하고 조 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호합의 결과는 유사 쟁점사안의 선례가 되지 않으며,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과세사안에 대한 구속력도 없습니다.

#### Ш

#### 상호합의 절차(MAP)의 신청

#### 2-1 대상조세

상호합의절차는 개별 조세조약과 국조법에 따른 제도로, 개별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조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조세의 범위는 개별 조세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자본 또는 자산에 부과되는 조세가 대상이므로 상호합의절차도 상기의 조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2-2 신청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 개별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측 권한 있는 당국(기획재정 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제42조 제1항)

#### 2-3 신청 사유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3가지입니다.

- ①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에서 설정한 거래가격이 제3자간 적용되는 정상가격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국조법 제7조), 그 과세조정에 따라 경제적 이중과세를 부담하게 된 납세자는 양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은 일반적으로는 이중과세가 있는 경우 그 이중과세의 해소를 목적으로 제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중과세가 없는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조 세조약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라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이 확정되어 고지되지는 않았으나 향후에 고지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는 확정처분 전이라 하더라도 상호 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연성은 단순한 과세가능성 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과세예고통지 등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관련 세목과 세액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2-4 권한 있는 당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국세청장)를 말하며, 체약 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국조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의 신청 사유에 따라.

①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기획재정부장

곾

- ②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 ③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권한 있는 당국이 됩니다.

이들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필요 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처분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2-5 개시제한 사유

납세자로부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받은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신청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합니다. (국조법 제42조 제2항)

-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과세조정에 대한 대응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②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③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④ 과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위의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국조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합의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혹은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조치 를 하여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리 측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조령, 제83조 제5항)

#### 2-6 신청 기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은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국조법 제42조 제2항) 일반적으로 과세사실을 안 날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상호합의절차의 신청기간은 국내법상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개별 조세조약에서 신청기간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3년의 신청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상호합의 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권한 있는 당국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상담의 대상에는 대상조세 해당여부, 신청인 적격, 신청기간 기산일 및 종료일,

상호합의 대상금액의 확정, 대응 조정의 방식 등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 2-7 신청 시 제출할 서류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국조령 제82조, 국조규칙 제48조)

- 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 ②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 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 ③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
- ⑤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 기간에 대한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과세대상 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 기업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
- ⑥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
- ⑦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
- ⑧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 정인 경우 그 신청서 와 결정서 사본(불복신청서 외의 서류에 한정)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 사 본
- ⑨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

신청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8 개시여부 검토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를 수령한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신청이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조령 제83조 제3항)

#### 2-9 개시신청의 접수처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국제조세협력팀) 또는 국세청 상호합의 담 당관실에서 접수합니다.

주소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우편번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조세 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국제조세협력팀), 국세청의 경우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 세청로 8-14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상호합의 담당관실입니다.

#### Ш

#### 상호합의 절차(MAP)의 진행 및 종결

#### 3-1 개시

적법한 상호합의 절차 개시신청이 있고 법령상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측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합니다. 반대로 체약 상대 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우리 측에 상호 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국조법 제42 조 제1항 및 제2항, 국조령 제83조 제1항)

우리 측 권한 있는 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에 통보한 날, 우리 측 권한 있는 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 받은 날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이 됩니다.(국조법 제45조)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에 의거하여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3-2 진행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면 우리 측 권한 있는 당국은 회의를 개최하여 체약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개별 조세조약은, 양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한 경우 반드시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여 이중과세 등을 해소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 사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제44조 제1항)

다만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지연하여 상호합의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납세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우리 측 권한 있는 당국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국조법 제44조 제2항)

#### 3-3 종료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하여 그 협의 결과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날을 말합니다.(국조법 제46조 제1항) 그 외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일 (다만,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 상호합의 절차 진행 중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그 신청철회일,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상호합의 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하는 경우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해당 합니다.(국조법 제46조 제3항)

#### 3-4 국내 소송절차와의 관계

상호합의절차는 국내법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국조법 제42조 제2항 제1호, 제46조 제3항 제1호) 상호합의 절차 이외에 국내 구제절차를 진행하고자하는 납세자는 그 심사·심판 행정소송 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제56조 제3항)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심사·심판.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심사·심판청구의 결정기간에도 산입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결일까지의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상의 심사·심판청구의 청구 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국조법 제50조)

예를 들어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 후 소송제기기간인 90일이 만료되기 이전에 상호합의가 개시되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종결된 경우, 소송제기기간은 상호합의 개시일부터 종결일까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되므로 남은 소송제기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5 행정적 권리구제수단과의 관계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제66조), 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 15)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 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3-6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이하 "고지유예등)를 할 수 있습니다. (국조법 제49조 제2항 및 제3항) 다만 고지유예 등은 상호합의 절차의 상대방인 체약상대국이 징수유예와 체납 처분유예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조법 제49조 제4항) 따라서 납세자가 우리 측에 상호합의와 함께 고지유예 등을 신청했더라도 상대방 국가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중에 고지유예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 고지유예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지유예나 분할고지의 결정이 있었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은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에 따른 세액을 고지합니다.(국조법제49조 제2항)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의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 종결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유예된 세액을 징수합니다.(국조법 제49조 제3항)

고지유예 등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국조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2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통보서 사본을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국조령 제91조 제1항) 고지유예 또는 분할고지를 신청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고지유예 등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고지유예 등이 이미 허용된 경우라도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합니다.(국조 령 제91조 제2항)

- ①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② 신청인이 국조법 제16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 허용 이후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유예된 세액을 납부할 때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조법 제49조 제5항, 국조령 제91조 제3항) 이자상당 가산액 계산 시 납부지연가산세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이 적용되며 유예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이 적용됩니다.

#### 3-7 OECD 모델조세조약 상 중재제도 도입 여부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개별 조세조약은 OECD 모델조세조약 상의 강제 중재제도 또는 이에 준하는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IV

#### 상수합이 결과이 시행

#### 4-1 결과의 시행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체약 상대국과 문서로 합의에 도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합의내용을 이행합니다.(국조법 제47조 제3항)

- ① 신청인이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 ② 상호합의절차와 불복쟁송(不服爭訟)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신청인이 상호합의 결과와 관련된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경우

신청인은 합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합의내용에 대한 수락여부와 관련 불복 쟁송 취하여부를 서면(국조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기한까지 합의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락 여부나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 절차 개시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국조령 제89조)

과세당국(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의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국조법 제47조 제4항)

반면 외국 과세당국이 과세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필요합니다. 체약상대국이 과세한 사안의 경우에는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납세자가 그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국조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상호합의 종결통보서(국조규칙 별지 제42호 서식)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하여야 합니다.(국조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국조령 제21조 제1항)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국조령 제21조 제2항)

#### 4-2 시행기한

체약 상대국과의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의 기간과 국세 기본법 상의 부과제 척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까지 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제51조 제1항)

즉, 국세기본법 상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다면 그 상호합의절차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의내용에 부합하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 /세금 신고 길라잡이!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 국세청, 2021. 6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위한「홈택스 2.0」구축의 일환으로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초행길 운전자에게 길을 찾아 주듯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세무 경험 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초기화면 좌측에 나타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신고·납부 전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세금 신고 납부 과정 〉

① 안내문 선택	② 신고서 작성	③ 신고서 관리	④ 납부 하기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하기	·부 <del>속</del> 서류 제출	·납부하기
·조회하기	・과거 신고내역 보기	·신고결과 조회	·납부결과 조회
	·신고 도움서비스	(접수증·납부서 출력)	

- 향후, 6월 이후에는 각종 세금고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도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을 위한 홈택스 2.0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홈택스 내비개이션 서비스 개요

-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 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처음 도입하여 5.4.(화)부터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내비게이션은 세금 신고안내문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진행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다음 해야 할 일(메뉴·화면)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납세자는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편안하 게 마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신고 진행상황,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신고부속서류 제출 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중 홈택스를 종료(로그아웃)하여도 다시 로그인 하면 종전의 진행단계가 자동 반영되어 다음단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신고기간\*에만 제공됩니다.
  - \* 성실신고확인제출자는 6.30.까지 제공

#### Ш

#### 홈택스 내비개이션 서비스 개요

#### 로그인 및 내비게이션 초기 화면

-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초기화면 좌측에 내비게이션이 나타납니다.
-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안내문·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경우 나타나며 신고기간 중인 세목의 안 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펼치기]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우측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펼쳐집니다.
  - ・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4단계(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하기)로 구성하여 제공됩니다.

#### 「안내문 선택」단계

- 「안내문 선택」단계에서 조회된 '안내문'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이 노란색 으로 활성화됩니다.(아래 그림①)
- 또한, 안내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보기] 버튼을 눌러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아래 그림②)

○ 다만, 안내문 보기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생체인 증' 등을 이용하여 인증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단계

- 신고서 작성하기, 과거 신고내역 조회, 신고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동영상 이용방법 등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 ◉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신고유형에 맞는 신고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 종전에는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주택임대소득' 등 납세자 자신의 신고유형에 맞는 화면을 직접 찾아가야 하였으나
- 내비게이션 도입으로 납세자가 신고유형을 모르는 경우도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자동 접속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또한,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전자신고 방법(동영상)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관리」단계

- 신고부속서류 제출, 신고 결과조회, 납부서·접수증 출력, 전자신고 삭제요청 등의 메뉴를 제 공하는 단계입니다.
  -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신고부속서류 제출] 버튼이 노란색으로 활성화됩니다.
    - \* 신고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신고부속서류 제출하기]와 [납부하기]가 함께 노란색 버튼으로 활성화 됨
  - 신고 결과조회 화면을 이용하여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하고, 납부서 또는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납부 하기」단계

- 내비게이션을 통해 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할 세액을 바로 확인하여 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 하기] 버튼이 노란색으로 활성화되어, 버튼을 누르면 계좌 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계획

- 향후, 6월 이후에는 각종 세금고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도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을 위한 홈택스 2.0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 가겠습니다.

#### 참고 1 - 내비게이션 서비스 대상 및 개시일

서비스	스 대상	서비스 개시일	제공기간
	납부고지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고지 · 독촉 분야	독촉장	6. 1.	독촉장에 기재된 독촉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7. 1.	7. 1. ~ 7. 25.
양도소득서	예정 신고	11. 1.	안내문 발송일 ~ 발송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상속 · 증여 · 종부	· 소비 · 법인세 신고	12. 1.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11일(금)	6월 14일(월)	6월 15일(화)	6월 16일(수)	6월 17일(목)
	달	러 (USD)	1115.00	1111.20	1116.40	1117.80	1117.70
일	본	엔 (JPY)	1019.62	1012.90	1014.31	1015.63	1009.44
영	국 파 운	드 (GBP)	1580.40	1568.63	1575.18	1574.03	1563.66
7H	나 다 달	러 (CAD)	921.94	914.00	919.68	917.40	910.70
홍	콩 달	러 (HKD)	143.68	143.16	143.83	143.99	143.97
위	안	화 (CNH)	174.65	174.13	174.40	174.57	174.53
유	로	화 (EUR)	1357.46	1345.72	1353.19	1355.50	1340.51
호	주 달	러 (AUD)	864.74	856.57	860.97	859.20	851.07
싱	가 폴 달	러 (SGD)	842.46	838.01	841.52	842.13	836.70
말리	베이시아링	기트 (MYR)	270.60	270.50	271.30	271.51	271.45

#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

- 국세청, 2021. 6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6월 15일(화)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 '20.9.1.~9.15. 상반기분 신청가구 및 '21.3.1.~3.15. 하반기분 신청가구
- □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심 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법정기한(6.30.)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 지난해 하반기분 지급 완료일 : 6.19.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 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 심사·지급 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지급 현황

-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67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6,218억 원입니다.
  - 심사를 완료하여 114만 가구에 5,208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 원입니다.

#### 2 유형별 지급현황

- (가구유형별)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 벌이 가구는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로 나타났습니다.
  -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입니다.
- (근로유형별) 일용근로 가구는 68만 가구(59.6%),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19.2%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3,016억원(57.9%), 상용근로 가구 2,192억원(42.1%) 순입니다.

#### 3 장려금 수령방법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급 완료일 (6.19.)보다 앞당겨 6.15.(화)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법정기한 '21.6.30.)
-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6월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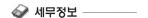
#### 4 지급결과 확인

●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ㅇ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 지급결과 확인

####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 반기 심사진행 조회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 참고 1 - '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통계

● 신청·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구 분	신 청		지 급		지급 제외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20년 하반기	167	6,218	114	5,208	53	1,010

#### ●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구 분	합 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구 군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년	114	5,208	72	2,819	38	2,108	4	281
하반기	(100)	(100)	(63. 2)	(54. 1)	(33. 3)	(40.5)	(3.5)	(5.4)

#### ⊙ 근로 유형별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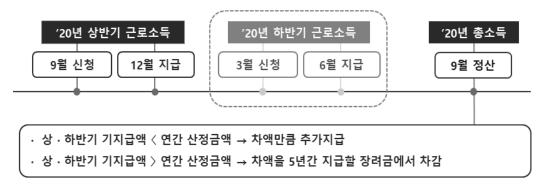
(만가구, 억원)

구 분	합계		일용근로가구		상용근로가구	
구 군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년	114	5,208	68	3,016	46	2,192
하반기	(100)	(100)	(59.6)	(57. 9)	(40. 4)	(42.1)

#### 참고 2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 제도 개요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1.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은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1년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Ⅰ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20년 귀속) Ⅰ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분	'20. 9. 1. ∼9.15.	'20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21. 3. 1. ∼3.15.	'21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 산	-	'21년 9월 중	추가지급 또는 차감

#### 참고 3 - 주요 문답 사례 (Q&A)

#### 사례 1

####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 '20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 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요건) '19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맣벌이 3천 6백만원)이고, '19.6.1.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사례 2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 습니다. 다만, '21년 8월말 정기·정산분 심사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사례 3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받았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했습 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합니다.
  -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한 것으로 의제

#### 사례 4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 ②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다운로드하여 확인
- ③ 홈택스: 인터넷(www. hometax. go. kr)에 접속하여 확인
- ④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 사례 5

####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요?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합니다.
  -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

#### 사례 6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 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21년 8월말 정산합니다.

#### Ⅰ 하반기분 장려금 지급액 Ⅰ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5만 ~ 52.5만 원	15만 ~ 91만 원	15만 ~ 105만 원

#### 참고 4 - 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구 분		2020년분 정기신청	2020년분 반기신청	
신청대상자		2020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징	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1. 5. 1. ~ 5. 31.	(상반기분) 2020. 9. 1. ~ 9. 15. (하반기분) 2021. 3. 1. ~ 3. 15.	
요건판단 기준일	가구원	2020. 12. 31.	2019. 12. 31.	
	소 득	2019년 연간 총소득 2020년 연간 총소득 2020년 연간 추정 근로스		
	재 산	2020. 6. 1.	2019. 6. 1.	
지급시기		2021. 9.	(상반기분) 2020. 12. (하반기분) 2021. 6. (정 산) 2021. 9.	
지급금액		산정금액의 100%	(상반기분) 35% (하반기분) 35% (정산) 30% 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	
(사례) 산정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120만 원 지급(2021. 9.)	42만 원 지급(2020. 12.) 42만 원 지급(2021. 6.) 36만 원 지급(2021. 9.)	

#### 참고 5 -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 개요

- (근로장려금 개요)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ㅇ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 원	15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260만 원
<u></u> 맞벌이가구	3,600만 원	300만 원

- 1) 총소득금액 : 근로(총급여액)·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조정률)·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2)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개요)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지급액(자녀 1인당)
홑벌이가구	4,000만 원	50 ~ 70만 원
맞벌이가구	4,000만 원	50 ~ 70만 원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부터 시행합니다

회계기준원, 2021. 6

- ◆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3.1.1일부터 시행)
   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 를 반영하여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는 시행일 前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을 위한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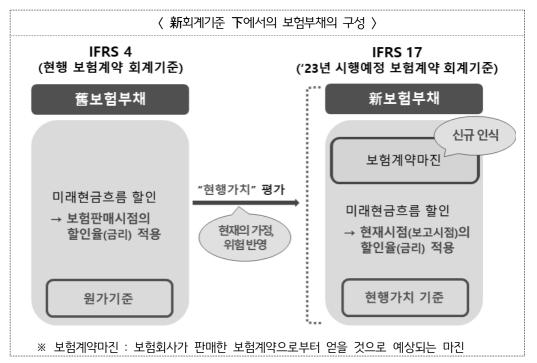
-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보험계약))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7(보험계약) 최종안을 확정·발표('20.6월)하였습니다.
  -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및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국제적으로 통 일된 보험회계 기준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 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21.6.9.)하였습니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주요 내용

- 1. 보험부채 측정 : 원가기준 → 현행가치
- □ (제정 사유) 현행 보험기준서(IFRS 4)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하여 보험

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 \* IFRS 4에서는 각 국가의 다양한 보험 회계처리 실무관행을 그대로 적용
- →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적용하여 보험부채 평가
-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이 있어 왔습니다.
- □ (주요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합니다.
- □ (제정 영향)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됩니다.
- 다만,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시 시장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 영 안정성도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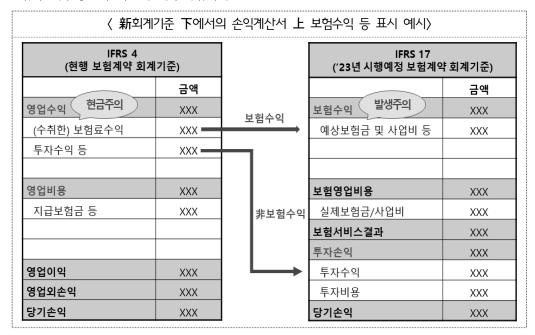


### 2. 보험수익 인식 : 현금주의 → 발생주의

- □ (제정 사유) 현행 보험기준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함에 따라.
  - \*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하여 보험료를 많이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가 전부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시에 수익이 증가
-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 왔습니다.

- □ (주요 내용)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발생주의)합니다.
-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 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자산의 투자수익, 보험부채의 금융위험 가정 변동 등
- □ (제정 영향)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발생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므로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의 세부 내용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자료실 참조

## 3 기대효과

□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되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부터 시행합니다

- □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 능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 新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국내 보험회사와 다국적 보험회사 재무제표 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4 향후 계획

- ① (관련 제도정비)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도모하겠습니다.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新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新지급여력 제도(K-ICS)를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 ('18.11월부터 운영)
- ② (회계기준 적용지원)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가 실무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① (보험사 건전성 관리·감독)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히 새로운 회계체계에 적응하도록 밀착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② (사전공시) 보험회사가 新기준서 도입 준비상황과 영향분석 등을 사전에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하겠습니다('21년 3분기 중).
  - \* ① 주요 재무영향, ② 회계결산시스템 구축현황 등
- ③ (정착지원 TF 운영) 'K-IFRS 제1117호 정착지원 TF'('21.4월~)를 통해 보험회사가 新기 준서 적용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

### (별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 FAQ

### 1. 시행일이 23년인데 지금 시점에 확정하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지?

- □ '23년 시행을 위해 보험사는 '22년부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 □ 또한, 회계기준이 확정되어야 보험업법령 개정 등이 가능하고,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발도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회계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2	IVCBOI	결정(23년	시해/고	다기	구비에서	시해이으	디크게	저요하	人	이느ㅠ	l٥
۷.	IA9B>I	결성(23년	시엔/파	달디	폭내에서	시엔일글	나느게	직光일	~	$X \leftarrow X$	1!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인 IFRS를 전면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시행시기('23.1.1.)에 대한 세계적 합의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

### 3. IFRS 17 '보험계약' 도입관련 해외 동향은?

□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및 캐나다는 이미 IFRS 17 '보험계약' 기준서 도입('21년 이전)

□ 유럽은 '23.1.1. 시행을 목표로 도입 절차 진행 중

[참고] 유럽의 IFRS 17 도입절차

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FRS 17 공표  $\rightarrow$  ②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의 IFRS 도입 자문서 제출('21.3월)  $\rightarrow$  ③ 유럽위원회(EC) 심의 (현단계)  $\rightarrow$  ④ 회계감독위원회(Accounting Regulatory Committee) 투표  $\rightarrow$  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도입 결정

### 4.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할 경우 효익은?

- □ 매 결산시점에 현재 시점의 할인율과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재측정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보험부채 정보를 충실하게 투자자에게 제공
- □ 보험회사는 부담할 보험부채의 가치를 평가하므로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이 보험회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 □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음
-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 확정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음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부터 시행합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가	도입되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심각히	취약해지는
	것이 아닌지?						

- □ 그 간 보험회사는 새로운 기준서 시행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등을 통해 부채를 미리 적립해 왔음
  - \* 보험부채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현행가치에 근접시키는 LAT(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를 운영 중
- 금융당국은 필요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등 선제적인 대응을 적극 유도할 계획

#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금융당국은 新지급여력제도	(K-ICS) 연착류	방안 등을	는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충실한	사전공
시를 유도함으로써 회계기	는 변경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 최소화할	계획		

# 8. 일반투자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에 따른 재무영향을 사전에 알 수 있는지?

- □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공시작성 편의와 재무정보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금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
- 일반투자자 등은 회사의 향후 감사(검토)보고서,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의 도입준비상황, 재 무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9. 보험업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감독회계 도 내용이 변경되는지?

- □ '변화되는 회계환경'에 적합한 보험감독회계\*를 마련할 예정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원칙 내에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 및 보험회사별 비교가능성 제고(감독목적 달성) 등을 위한 감독회계기준

# ESG 보고 관련 IFRS재단의 등향

- 회계기준**원, 2021**. 6

### 1 배경

-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확대되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블랙록 등 거대 기관투자자들을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정보 기반 사회적 책임투자확산 → 기업이 공시하는 ESG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
  - 반면, 국제적으로 통일된 단일의 ESG 정보 공시 기준의 부재로, 산출된 ESG 정보의 비교 가능성 및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단일의 기준 제정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 역시 증가
- □ IFRS재단은 이러한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재단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자 협의문서를 발표하여 외부의견을 조회('20년 9월)
- 외부의견검토결과, 단일의 국제지속가능성보고기준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요구를 확인하고, 재단 內 ISSB를 설립을 위한 IFRS재단의 정관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21.4.30)
- □ 기준원에서는 IFRS재단의 ISSB 설립 및 지속가능성기준 제정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FRS재단의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내 대응방안을 마련 중

### 2 ESG보고 관련 IFRS재단 동향

### 가. 지속가능성보고에 대한 협의문서 발표('20.9월)

- □ IFRS재단은 지속가능성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재단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지속가능성보고 협의문서 '를 발표('20.9월)하고 전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회
  - \* 비재무보고 또는 ESG보고라고도 하며, 전통적인 재무보고(IFRS)와는 달리, 보고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공시하는 것을 말함
  - 의견조회결과 전 세계 단일의 지속가능성보고기준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요구를 확인하고,

기준 제정을 위해 IFRS재단 內 새로운 기준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확인

- ➡ IFRS재단은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 및 WEF(세계경제포럼)등의 지지하에 재단 內 국 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하기 위해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정
  -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 나. IFRS재단의 정관개정 공개초안 발표('21.4월)

- □ IFRS재단은 재단 내 ISSB를 설립하기 위한 정관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21.4월)
- 정관 개정안에서는 정관에 ISSB의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ISSB 위원의 구성(위원수, 고용형 태, 지역배분 등) 및 자격요건 등을 포함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IFRS재단 內 IASB와 ISSB 두 기준제정기구가 있으며, ISSB를 통해 'IFRS 지속가능성 기준'을 개발하고자 함(정관 2조)
  - ISSB는 14人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IFRS재단 이사회가 정관 15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 (정관 43조)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 \* 아시아-오세아니아: 3석, 유럽: 3석, 아메리카: 3석, 아프리카: 1석, 지역무관: 4석

〈 부속서: ISSB 위원 자격요건 주요 내용 〉

- 지속가능성 분야와 지속가능성보고에 관한 숙련된 지식, 분석능력
- 2 의사소통 능력, 정확한 판단력
- 3 지속가능성보고 환경에 대한 이해, 협조적인 업무수행
- ₫ 진실성, 객관성 및 절제력
- 6 재단의 사명 및 공익에 대한 헌신
- ➡ 재단의 의견조회기간은 '21.7월말까지이며, 기준원은 정규절차에 따라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회를 거쳐 정관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 의견을 재단에 제출할 예정

### 다. 재단의 전략적 방향성 및 실무단(working group) 구성('21.4월~)

□ IFRS재단은 협의문서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재단의 ISSB 설립 및 기준제정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다음 4가지로 설정함

〈 ISSB 설립 및 기준제정 관련 재단의 전략적 방향성 〉

- 투자자에 중요한 정보에 초점(기업가치 중심)
- 2 지속가능성 범주-기후우선
- 3 기존 개념체계 활용
- 4 빌딩블록(building-block) 접근방식 채택
- □ 향후 신속한 기준제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ISSB에서 제정할 기준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연구할 기술적준비실무단(Technical Readiness Working Group) 구성

- ➡ 본 실무단은 SASB/IIRC, CDSB, TCFD 및 IASB의 기존 기준제정 전문기구들로 구성되었으며, WEF, IOSCO 및 IPSASB가 관찰자(observer)로 참여
  - \* 참고: 빌딩블록 접근방식 관련 사전 작업을 수행할 별도의 Multilateral Working Group 구성도 논의 중

## 라. ISSB 위원장 선임 절차 진행('21.6월~)

□ IFRS재단은 정관 개정 절차와 동시에 ISSB 위원장 선임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 〈참고: IFRS재단의 ISSB 위원장 선임 일정(안)〉

내용	완료(예정)일
○ ISSB 위원장의 자격기준(요건) 논의	'21. 3월말
ㅇ 정관에 반영될 ISSB 위원장의 자격기준 승인	<b>'</b> 21. 4. 19
ㅇ ISSB 위원장 자격기준을 포함 정관개정 공개초안 발표	<sup>'</sup> 21. 4. 30
ㅇ 재단 SR추진위원회에 진행경과 보고	'21. 5월
ㅇ 후보자 채용 공고	<b>'</b> 21. 6. 1
ㅇ 후보자 인터뷰 및 최종 후보자 선정(인사위원회, 감독이사회)	'21.7~8월
ㅇ 감독이사회와 최종후보자 면담 및 평가서 제출	'21. 9월
ㅇ 재단이사회에서 ISSB 위원장 최종 승인 및 임명	'21. 10. 19~21
ㅇ COP26에서 ISSB 위원장 선임 공표	'21. 11. 1~12

➡ IFRS재단은 현재 ISSB 위원장(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세부절차(헤드헌터사 계약, 위원 장 선임 공고 등)를 수립하였으며, '21.6.1일 위원장(및 부위원장) 채용 공고안을 발표

### 마. 향후 일정

- □ IFRS재단은 '21.10월까지 정관 개정과 지속가능성보고 프로젝트에 대한 재단의 최종제안서 (기준제정 로드맵 및 일정 포함)를 완료할 예정
- ➡ IFRS재단은 '21.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 예정된 COP26(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ISSB의 설립과 ISSB 위원(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또한, 재단은 ISSB가 제정할 ESG 관련 최초 기준(기후 관련 지속가능성기준)을 내년 상반 기 중 공표할 것을 목표
- ➡ 향후 ISSB의 기준 제정 주제는 기후 외의 다른 ESG 주제(topic)들로도 확장될 예정

#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3년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20**21. 6

- □ 소부장 강소기업 등 기술혁신 활동을 선도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 력 200여 명 공급
- □ 정부는 연구인력 연간 인건비의 50%를 3년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수급 애로 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채용과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하반기 연구인력지원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주요내용 〉

구 분		대상인력	지원내용	지원규모
71)	신진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만 39세 이하)	■ 기업별 최대 1명(3년까지) ■ 기준연봉의 50% 지원	140명 내외
채   용	고경력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박사 5년 이상 경력 자	■기업별 최대 1명(3년까지) ■연봉의 50% 지원 (최대 5,000만원/년)	60명 내외
파견		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	■ 기업별 최대 1명(3년+3년) ■ 기준연봉의 50% 지원	수시 매칭

### ①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역량을 높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인력의 경력(표 참조)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7월 5일(월)부터 7월 16일(금)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 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공고는 6월 16일(수) 진행된다.

### ②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우수연구인력을 파견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에 대해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평가, 선정, 협약체결로 이뤄진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활성화를 위해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 우대사항 : 신진 및 고경력 채용 최대 2명(각 1명), 공공연 파견 최대 2명 지원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 개발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참 고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요

##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 사업개요
  -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집행기관: (전문)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사업예산('21) : 139.2억원

#### □ 사업내용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및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만39세 이하)
- (지원내용) 3년간 기준연봉의 50%지원, 기업별 1명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十 正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 추진일정

○ 사업공고(6.16), 신청접수 및 평가(7~9월), 선정 및 협약체결(10월)

### □ 추진실적

○ ('18) 140억원, 666명 → ('19) 150억원, 726명 → ('20) 158억원, 791명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130, 9082, 9090)

# 2 고명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 사업개요

○ 집행기관: (전문)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사업예산('21) : 102.9억원

### □ 사업내용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및 이공계 출신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 (지원내용) 3년간 계약연봉의 50%지원, 기업별 1명

구분	연봉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	l 제한 없음	기준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 추진일정

아 사업공고(6.16), 신청접수 및 평가(7~9월), 선정 및 협약체결(10월)

## ☞ 경영정보 ───

### □ 추진실적

○ ('18) 52억원, 141명 → ('19) 56억원, 153명 → ('20) 84억원, 233명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172, 9083)

# 3 공공연 연구인력 패견지원

### □ 사업개요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노하우 전수 및 연구개발 수행 지원을 통한 기 술혁시역량 강화
- 집행기관: (전문)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사업예산('21) : 71.7억원

### □ 사업내용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내용)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 파견, 3년 이내 지원(추가 연장 3년 가능), 기업별 1명 (소재부품장비 우대 적용기업 최대 2명)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파견 최초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3년*	파선한무기한 한중의 JOW (한도 세인 없음)

\* 추가연장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 □ 추진절차

○ 공고(2.3), 신청접수(상시), 평가 및 선정(상시), 협약체결(상시)

#### □ 추진실적

- ('18) 99억원, 163명 → ('19) 83억원, 148명 → ('20) 72억원, 129명
-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7382, 7388)